

## 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 - 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. 답변하여야 하며,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 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. 답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66조(군수등의 출석요구) ①-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때에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. 답변하여야 하며,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. 답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개시전 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【 6 】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

발의년월일 : 1994. 7. 29.

발 의 자 : 이은선의원외 1인

##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양주군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양주군  
의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임.

## 주요골자

1. 선임위원수 : 3인

2. 선임위원  대표위원 : 권선안 의원

위 원 : 박홍문, 김상오

3. 위촉기간 : 94. 8. 22 - 9. 10 (20일)

## 199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견

 선임목적

양주군의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과 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선임을 위함임.

 선임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
- 양주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 선임위원 : 3인

대표위원 : 권선안 의원

위 원 : 박홍문 (전직 공무원)

김상오 (현직 세무사)

 위촉기간 : 94. 8. 22 - 9. 10 (20일)

## 【 7 】 양주군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4. 8. 3.

제 출 자 : 양 주 군 수

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'94. 3. 16) 및 동법시행령 개정('94. 7. 6)으로 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보상금 지급대상 (안 제3조)